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56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개관	4
2. 총괄적 검토	7
3.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제명 및 총칙 관련 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6
1) 제명 및 목적	17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3) 주관	20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무원의 의무	22
나. 건강안전 재원(안 제6조)	24
다. 계획 수립 및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심의(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28
라. 협의회, 지원단, 건강안전수준 평가, 통계(안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36

마.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39
1) 공무원 건강안전관리사무 수행 인력	41
2) 건강안전관리규정	46
바.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48
사. 보칙 관련 규정(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53
아. 부 칙	6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8.

다. 회부연월일 :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지급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악성민원이나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원 재해가 이슈로 부각되는 등 직무 스트레스·업무 중압감·과로 등의 새로운 재해요인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중 재해의 예방에 관해서는 1개조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예

방을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담당관,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건강관리의 등을 지정·위촉하도록 하고, 건강안전책임관 및 건강안전담당관에게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및 건강관리의 등의 조언 등을 따라 조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기관별로 조직·예산,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인사혁신처에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을 설치하여 건강진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인사혁신처가 5년 단위의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아. 인사혁신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일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특히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업무상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카. 건강안전책임관은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직무휴지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승인하고, 공무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가 심리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서, 본칙 34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게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 주관으로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시행계획 등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각 중앙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건강안전책임관·건강안전담당관·건강지도관·건강관리의로 구성되는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건강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업무상건강 검진의 지원, 심리검사의 지원, 긴급직무휴지, 긴급 통합지원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무원 건강 및 안전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직건강 지도사 자격 제도,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나 관련 절차는 해당 법률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조와 같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이원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1조(목적)	제18조(실태조사)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주관)	제20조(계획수립의 협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건강안전 수준 평가)
제5조(공무원의 의무)	제22조(공무상 재해 현황 통계)
제6조(건강안전 재원)	제23조(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제7조(건강안전책임관)	제24조(건강검진 수검 지원 및 관리)
제8조(건강안전담당관)	제25조(업무상건강검진의 지원 등)
제9조(건강지도관)	제26조(심리검사의 지원)
제10조(안전지도관)	제27조(검진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11조(건강관리의)	제28조(긴급직무휴지)
제12조(건강지도관 등의 지도·조언)	제29조(긴급통합지원)
제13조(건강안전관리규정)	제30조(건강안전교육)
제14조(건강안전협의회)	제31조(공직건강지도사의 직무)
제15조(건강안전심의위원회)	제32조(공직건강지도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제16조(공직건강안전지원단)	제33조(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제1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34조(업무의 위탁)

부 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 제3조(건강안전 재원에 관한 적용례)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2. 총괄적 검토

최근 공무상 재해로 공무원이 사망 또는 자살한 사례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심리적 충격과 사기 저하, 유가족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2019~2024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공무상 재해	6,129	6,280	5,447	5,758	7,269	7,826
사망	74	69	70	109	64	83
자살	4	7	10	22	16	18

※ 1심(재해보상심의회)에서 승인된 인원 기준

※ 공무상 재해 건수는 요양자수 + 사망자수

자료: 인사혁신처

《2019~2024년 재해보상급여 지급액》

(단위: 억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673	1,739	1,751	1,869	2,080	2,172

자료: 인사혁신처

특히, 악성민원·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원 재해가 이슈로 부각되는 등 직무 스트레스·업무 중압감·과로 등이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대응 등 재해에 대한 사후관리보다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1) 민원·갑질 시달리다... 세상 등진 공무원 올해 들어 벌써 10명(한국경제, '24.5.14)

공무원 업무상 질병 1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근로자의 11배(뉴시스, '24.6.21)

재난 때 불려가도 보호는 뒷전...공무원 재해보상법 '구멍'(파이낸셜, '25.5.16.)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²⁾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외)에 대해서는 동법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³⁾

현행법상 공무원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재해보상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예방에 관한 조항은 1개 조문⁴⁾에 불과한 실정이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생략) * 고용부 고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 교육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의 예방

경찰이나 소방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별 법률을 통해 별도의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공무원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공직 내 재해예방 정책 적용 현황》

: 재해예방 정책 사각지대		
일부 특정직 (경찰(해경)·소방 등) 보호↑ 특정직 개별법	소 공무원 (국가·지방 공무원) 정책 미비↓ 공무원 재해보상법	현업업무 종사자 (경비·조리 등)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 인사혁신처

이와 같이 공무원 직종 간 재해예방 체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한 조문 개정만으로는 모든 공무원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예방-보상-재활’이 선순환하는 법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 예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규율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전체 공무원(군인 및 선출직 공무
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포괄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
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
적 성격의 법규범을 제정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법체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고 보임.

첫째, 제정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이라는 개념
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의 범위가 불명확
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 즉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⁵⁾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
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 예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안 제1조), ‘건강 및 안전’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

‘건강’의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서 정의하듯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건강 및 안전’ 개념을 법률의 목적으로 할 경우 국가의 책임 범위가 개인의 건강 문제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 및 안전’의 개념을 직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거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제정안은 총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의 장 구분 없이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어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장(章)의 구분을 통해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반적으로 법률은 총칙, 실체적 규정, 보칙, 부칙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장으로 편제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이는데,

제정안의 경우에도 조문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조문의 배치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정안은 총칙과 관련 내용(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건강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기본계획, 건강안전심의위원회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및 관리에 관한 내용(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관리규정 등), 각 기관별 건강안전 확보 조치와 관련된 내용(위험요인 진단, 건강검진, 긴급직무휴지, 등), 보칙과 관련된 내용(공직건강지도사, 전자관리시스템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책 추진의 주체나 내용상 유사성을 기준으로 관련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라 건강·안전지도관 배치,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운영, 건강안전 수준 평가, 건강안전교육 실시 및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6억 8,800만원, 2031년 121억 4,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13억 6,600만원(연평균 122억 7,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강·안전지도관 배치 (안 제9조·제10조)	11,810	11,146	11,449	11,759	12,079	58,243	11,649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안 제15조제3항)	7	7	7	7	7	35	7
건강안전 수준 평가 (안 제21조)	11	11	11	11	11	55	11
건강안전교육 (안 제30조)	41	41	41	41	41	205	41
건강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안 제33조)	2,819	-	3	3	3	2,828	566
합계	14,688	11,205	11,511	11,821	12,141	61,366	12,273

주: 본 추계는 안전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보수 수준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인사혁신처는 제정안에 대해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의한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제정안 시행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겸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민감정보 활용에 따른 거부감이나 긴급직무 휴지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구교육청은 제정안 시행 시 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05048)이 발의되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제정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제정안은 총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의 장 구분 없이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어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제정안의 내용은 총칙과 관련 내용(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원 등), 건강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기본계획, 시행계획, 위원회, 실태조사, 통계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및 관리에 관한 내용(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관리규정 업무상건강검진 등), 기관별 건강안전 확보 조치와 관련된 내용(위험요인 진단, 건강검진, 긴급직무휴지, 교육 등), 보칙과 관련된 내용(공직건강지도사, 전자관리시스템, 위탁 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내용을 기준으로 조문을 분류하고, 각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제명 및 총칙 관련 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관)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②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3.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명 및 목적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으로 하고, 동법의 목적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제명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 또는 특례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기본법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제명에 기본법임을 사용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목적과 관련하여, 제정안의 목적에 제시된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임.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 예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안 제1조), 이하의 조문에서 ‘건강 및 안전’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사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6)에
서는 업무로부터의 ‘안전’ 또는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국민 건강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 범위에 중첩이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 제정안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7)의 목적을

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확대·개편하여 공무원을 공무 수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 및 안전’의 개념을 직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거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2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1호⁸⁾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정안은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 또는 일반법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임.

-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원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런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게 표현된 측면이 있으므로,⁹⁾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¹⁰⁾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총칙의 편·장 등이 있는 경우 총칙의 마지막 부분에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문은 책무규정(안 제5조)의 다음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주관

안 제3조는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건강 및 안전 제도를 주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¹¹⁾

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11) 사업 시행의 주체가 인사혁신처장이 아닌 ‘인사혁신처’로 기술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타로 보임.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도록 한 점과 같은 법 제46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¹²⁾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의 총칙 부분에서는 주관 기관의 역할 등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하위 계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동 제정안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지속

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의 예방 (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원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적·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무원의 의무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안 제4조).

공무원에게는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 법의 조치사항과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안 제5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13)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근로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

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공무원의 준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4조제3항(인사혁신처장이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은 안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낮은 것으로 보임.

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 건강안전 재원(안 제6조)

제6조(건강안전 재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에서 지원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제34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한다.

부 칙

제3조(건강안전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49조의 제목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각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48조제1항”은 “제48조제1항 및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 제6조제2항”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제50조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9호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제61조제3항 중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를 ”제47조제2항에“로 한다.

안 제6조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칙으로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원에 관한 선언적 성격의 규정만을 두고 있음.¹⁴⁾

제정안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을 확대·개편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주관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수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임.

1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분리·확장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외에 동 법률에서 재원의 조성이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제정안과 같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첫째, 현재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비용 지출의 경우 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 발생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곧 보상급여 지출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상급여와 예방사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둘째, 보상급여 및 예방사업 각각에 대한 재원 모두 인사혁신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과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고, 이에 따라 두 재원을 별도로 조성·운영하는 데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행정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셋째, 민간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¹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6조¹⁶⁾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하여 해당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재원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재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계획 수립 및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심의(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15조(건강안전심의위원회) ①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의 설치·운영
2. 제17조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심의
3. 제19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시행계획의 심의
4. 제28조에 따른 긴급직무휴지 직권승인에 대한 심의
5. 공무상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또는 건강관리의로 한다.

⑤ 헌법기관 소속의 건강안전심의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소속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처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1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연도별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 항목, 주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 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1조에 따른 건강안전 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2조(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연도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7조 및 제19조)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18조) 및 업무 협조(안 제20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 수립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¹⁷⁾는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을 인사혁신처장의 재해예방 지원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제58조제4항은 “의료·직무·사회심리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계획의 마련”을 인사혁신처장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법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 시행령에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획 수립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 조사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율 대상으로 포괄해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의 규범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해예방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등”이라 함)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공공 부문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를 통한 피드백 체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예방 사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5년마다) 및 연도별 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이 입법화되면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을 위한 행정계획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연도별 계획, 기관별 시행계획

등 정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건강안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업무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제정안에서 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헌법기관 및 인사혁신처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의 설치·운영(제1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심의(제2호), 시행계획의 심의(제3호), 긴급직무휴지 직권승인에 대한 심의(제4호), 공무상 재해에 대한 조사(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호에 따른 업무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는 국가 전체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긴급직무휴지 등 기관 단위의 건강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혼재되어 있고,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긴급직무휴지 직권승인 시 해당 위원회 심의가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헌법기관 및 인사혁신처에는 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제외되어 있으나, 심의

사항 중 시행계획의 심의, 긴급직무휴지 직권승인에 대한 심의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임.

아울러, 제정안은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건강안전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라는 점에서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재량규정(~둘 수 있다)으로 하기보다는 의무화(~둔다)할 필요가 있다고 봄.¹⁸⁾

따라서,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설치하는 기관 및 설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의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둘째,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 사무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8)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⁹⁾ 심의기구인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처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나,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업무 중 “제16조에 따른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설치되는 집행기관으로 위원회 심의의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안전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무처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4조²⁰⁾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별 법률에서 부속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건강안전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이는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²¹⁾에 따라 자문위원회에는 사무기구 설치 불가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안 제15조제5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0)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1)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협의회, 지원단, 건강안전수준 평가, 통계(안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14조(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직건강안전지원단) ① 공무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각 권역에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의 신체·정신 건강에 관한 검진 및 상담
2. 공무원의 신체·정신 건강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공상(公傷) 공무원의 복귀 및 재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
4.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지원
5. 공무원의 경력 개발·경력 경로 설계 등에 대한 상담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원단에 제11조에 따른 건강관리의 및 제31조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를 둘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강안전 수준 평가)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이하 “건강안전 수준 평가”라 한다)한다. 다만,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안전 수준 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이행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건강안전 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 수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이행 결과 공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무상 재해 현황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건강안전협의회(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위원: 건강안전책임관)의 구성·운영(안 제14조), 인사혁신처 소속의 권역별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16조),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 평가(안 제21조),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²²⁾(안 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사혁신처장이 중심이 되어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2) 현재 재해보상 급여와 관련하여 그 결정·지급 현황 등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나, 재해예방 및 재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는 작성·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인적 네트워크의 제공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공무원 건강안전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평가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조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마.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7조(건강안전책임관)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건강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제13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 제19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건강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제22조에 따른 기관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4. 제23조에 따른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5.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의 실시, 지원 및 조치
6. 제28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긴급직무휴지에 관한 사항
7. 제30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건강안전교육
8. 그 밖의 소속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책임관의 자격·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강안전담당관)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조하여 해당 기관의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건강안전담당관”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자격·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지도관)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건강지도관”이라 한다)을 배치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31조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지도관의 업무·자격·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지도관)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지도관”이라 한다)을 배치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안전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도관의 업무·자격·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강관리의의)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의의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건강지도관으로 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강관리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업무 배치, 업무 전환 또는 긴급직무휴지 등 소속 공무원의 건강 확보 조치에 관한 지도

2. 공무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건강관리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의의 자격·임명·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강지도관 등의 지도·조언) 건강안전책임관과 건강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을 포함한다)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건강지도관

2. 제10조에 따른 안전지도관

3. 제11조에 따른 건강관리의의

제13조(건강안전관리규정)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

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위험요인 진단과 조치의 방법·절차·시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무원 건강안전관리사무 수행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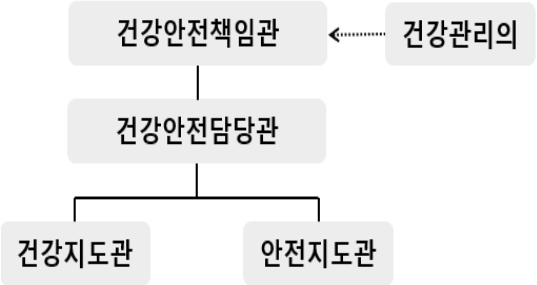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건강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조항으로, 기관별 공무원 건강안전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기관의 장등은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재해예방 업무 총괄)과 “건강안전담당관”(건강안전책임관 보조)을 지정하고, “건강관리의”(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 및 건강지도관에 대한 지도 업무 수행), “건강지도관”(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 수행) 및 “안전지도관”(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 수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기관 내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

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기관의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건강안전관리체계 조직도 및 역할》

❖ 건강안전관리체계 조직도	❖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성원별 역할										
 <pre> graph TD Manager[건강안전책임관] HealthMgmt[건강관리의] Officer[건강안전담당관] HealthGuide[건강지도관] SafetyGuide[안전지도관] HealthMgmt -.-> Manager Manager --> Officer Officer --> HealthGuide Officer --> SafetyGuide </pr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775 694 978 840">건강안전책임관</td><td data-bbox="981 694 1394 840"> - 소속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시책 수립·추진 총괄 - 건강안전협의회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td></tr> <tr> <td data-bbox="775 844 978 929">건강안전담당관</td><td data-bbox="981 844 1394 929"> -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 보조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td></tr> <tr> <td data-bbox="775 934 978 1041">건강지도관</td><td data-bbox="981 934 1394 1041"> - 건강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 국가기관의 장등이 배치 * 공직건강지도사 등에 위탁 </td></tr> <tr> <td data-bbox="775 1046 978 1131">안전지도관</td><td data-bbox="981 1046 1394 1131">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 국가기관의 장등이 배치 </td></tr> <tr> <td data-bbox="775 1135 978 1285">건강관리의 ※ 의사</td><td data-bbox="981 1135 1394 1285"> - 검진 결과 검토 및 관련 조치 - 건강장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학적 조치 - 국가기관의 장등이 임명·위촉 </td></tr> </table>	건강안전책임관	- 소속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시책 수립·추진 총괄 - 건강안전협의회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건강안전담당관	-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 보조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건강지도관	- 건강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 국가기관의 장등이 배치 * 공직건강지도사 등에 위탁	안전지도관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 국가기관의 장등이 배치	건강관리의 ※ 의사	- 검진 결과 검토 및 관련 조치 - 건강장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학적 조치 - 국가기관의 장등이 임명·위촉
건강안전책임관	- 소속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시책 수립·추진 총괄 - 건강안전협의회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건강안전담당관	-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 보조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건강지도관	- 건강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 국가기관의 장등이 배치 * 공직건강지도사 등에 위탁										
안전지도관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 국가기관의 장등이 배치										
건강관리의 ※ 의사	- 검진 결과 검토 및 관련 조치 - 건강장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학적 조치 - 국가기관의 장등이 임명·위촉										

자료: 인사혁신처

민간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제15조),²³⁾

2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외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제16조부터 제19조까지)²⁴⁾ 의료인력으로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제22조),²⁵⁾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5조).²⁶⁾

그러나 건강안전업무 담당자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실질적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성에 맞는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기관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민간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공공 부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5)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근무 현장별로 기능할 수 있는 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안전관리체계 비교》

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역할 비교
건강안전책임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 사업(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유사
건강안전담당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제19조, 제16조)	◦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는 실무자라는 점에서는 안전 보건관리담당자와 유사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관리감독자와도 유사
안전지도관	안전관리자 (제17조)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기관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담당관)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이 유사
건강지도관	보건관리자 (제18조)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기관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담당관)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이 유사
건강관리의	산업보건의 (제22조)	◦ 근로자(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지도하는 의사로서 역할이 동일

2) 건강안전관리규정

안 제13조는 공무원 건강안전관리를 규율하는 규범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기관의 장등으로 하여금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사항(관리조직과 교육, 사고조사·대책 수립)²⁷⁾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예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견정취 절차)²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별 구체적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발적·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 기관이 건강 및 안전

27)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보 시책을 조직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및 업무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전체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아 유형별로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배포하거나 제정안과 같이 각 기관별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되 인사혁신처장이 기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⁹⁾

29)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바.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23조(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공무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건강검진 수검 지원 및 관리)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상건강검진의 지원 등)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이하 “업무상건강검진”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연구·통계분석·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와 건강장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업무상건강검진을 지원하거나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심리검사의 지원)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를 지원하거나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검진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검진·검사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 관리 현황이나 조치 결과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긴급직무휴지)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업무를 지속할 시 중대한 공무상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건강안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에 관하여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건강관리위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병가(이하 “긴급직무휴지”라 한다)를 신청·승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긴급직무휴지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안전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긴급직무휴지를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④ 건강안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직무휴지를 직권으로 승인한 경우, 긴급직무휴지 직권 승인 필요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건강안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건강안전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긴급직무휴지한 경우 건강관리위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담 또는 의사의 진료를 제공하고, 기타 인사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직무휴지 중인 공무원이 건강상태를 회복하였다는 의사 또는 건강관리위의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⑦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직무휴지 후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긴급통합지원)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 조사, 심리안정지원 등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건강안전교육)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건강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건강안전책임관
2. 제8조에 따른 건강안전담당관
3. 제9조에 따른 건강지도관
4. 제10조에 따른 안전지도관
5. 제11조에 따른 건강관리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안전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공무원의 건강안전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안 제23조), 건강검진 수검 지원 및 관리(안 제24조), 업무상건강검진의 지원 등(안 제25조), 심리검사의 지원(안 제26조), 검진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 등(안 제27조), 건강안전교육(안 제30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직무휴지(안 제28조), 긴급통합지원(안 제29조)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통해 예방하고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로 보임.

다만, 긴급직무휴지의 직권승인과 관련하여 기관에 건강안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안 제28조제4항 단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에 따른 긴급직무휴지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를 지속할 경우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건강안전책임관이 건강관리과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5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신청·승인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안전책임관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권승인이 주관적·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승인의 적절성에 대해 사후적으로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기관에 건강안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직무휴지의 직권 승인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대다수 공무원에 관한 심의는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외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긴급직무휴지의 직권승인과 관련하여 기관에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직권승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헌법기관 소속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긴급직무휴지에 관한 심의는 인사처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건강안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사. 보칙 관련 규정(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1조(공직건강지도사의 직무) 공직건강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지도
2. 제25조 및 제26조의 결과에 따른 인사상 사후관리 방안 지도
3. 업무재배치 및 업무재조정 등에 관한 지도
4. 조직 또는 개인의 고충 상담 보조 및 필요사항에 대한 조언과 지원
5.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방안 지도
6. 제30조에 따른 건강안전교육
7. 그 밖에 공무원 건강안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공직건강지도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①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직건강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건강과 관련된 근무경력 또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⑥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직무를 시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인사혁신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자격시험의 집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스템의 구축·운영, 수집·보유·이용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는 공직의 특성에 맞는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적합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직건강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 직무와 제도 운영을 위한 자격·시험 및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는 주로 산업 현장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을 예방, 진단,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기계·전기·화공·건설 분야의 안전공학적 문제나 직업성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환경의 위생공학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반면, 공직 사회의 건강·안전 문제는 산업 현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다수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 응대,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에 더 크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자격제도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공직건강지도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기관의 건강지도

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와 공직건강지도사(안) 비교》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공직건강지도사(안)(*)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직무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지도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지도 -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지도 - 건강검진 결과 등에 따른 인사상 사후관리 방안 지도 - 업무재배치 및 조정 등에 관한 지도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방안 지도 - 건강안전교육 등
시험 과목	<u>1차(공통)</u>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일반 - 기업진단·지도 <u>2차(선택)</u>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 안전, 건설안전 중 1 <u>3차(면접)</u>	<u>1차(공통)</u>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일반 - 기업진단·지도 <u>2차(선택)</u> -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중 1 <u>3차(면접)</u>	<u>1차(필수)</u> - 행정법(공무원 관련 법령 포함) - 행정학(인사 조직론 포함) - 심리학(사회·산업·조직심리학) <u>2차(필수/선택)</u> - 필수: 1차 과목과 동일 - 선택: 직업환경의학, 산업 위생공학 등 중 1
자격 취득 후 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연수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연수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인사혁신처 또는 위탁 교육 기관에서 연수교육 실시

자료: 인사혁신처(재편집)

*공직건강지도사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가 예상한 가안임.

다만, 공직건강지도사는 안 제9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제9조(건강지도관)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건강지도관”이라 한다)을 배치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31조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지도관의 업무·자격·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업무를 위탁할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수와 위탁 여부를 각 기관이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³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도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급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30)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 ④ (생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또한, 제정안은 공직건강지도사의 직무,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자격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전문자격 제도로서의 신뢰성 및 윤리성 확보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규정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임.

안 제33조는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피요청기관의 자료제출의무(제2항)와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수집·보유·이용 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3항)하고 있음.

현재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³¹⁾

제정안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3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반면,³²⁾

제정안에 따른 시스템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민감한 정보도 취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으로, 개인정보의 취급 여부와 이에 따른 보완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³³⁾

32)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

한편, 안 제34조는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예방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정책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외에도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 표현의 수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³⁴⁾

《안 제34조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34조(업무의 위탁) <u>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제34조(업무의 위탁) <u>이 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는</u> ----- ----- <u>그</u> ----- -----.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건강안전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를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 및 그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직무복귀”를 “재활·직무복귀”로 한다.

제49조의 제목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각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48조제1항”은 “제48조제1항 및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 제6조제2항”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제50조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9호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제61조제3항 중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를 ”제47조제2항에“로 한다.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정비가 필요하므로,³⁵⁾ 부칙 제4조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 및 그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상 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 법률안의

3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본다.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정될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의 개정은 재원 마련과 관련된 사항을 동 제정안에서 직접 규율할지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확대·개선할지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42